붙임 1. 취소 전 청문 대상(공시송달, 12개사)

번호	기업명	인정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1	키움바이오	2023110139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2026년 8월)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2	원웰	2025151662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8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3	한솔템	2025152783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8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4	트렌드립	2026150191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8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5	에스엘피알티	2026151619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8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6	서진인쇄	2023158041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5호
7	일레닉	2024152027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5호
8	첨단정보시스템(주)	2023111283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2026년 6월)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9	(주)리본코퍼레이션	2024111543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6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10	(주)솔로몬	2024112105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6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11	(주)스피나이	2025110110	창업3년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2026년 6월 만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
12	(주)벨라도	2022153253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음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5호

붙임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 안내(공문)

세상을 바꾸는 기술! 미래를 여는 K-Tech!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인이 만들어 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신자 대표이사(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개발전담부서장)
(경유)
제 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전 12월 청문 안내

1. 귀사의 연구소/전담부서는「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절차(청문)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인정취소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아래 방법① 또는 ②)를 이행 바라며, 미조치 또는 청문 미소명시 귀사의 연구소/전담부서는 최종 인정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취소</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인정번호:)</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인정취소
원인해소를 위한
조치 방법 (택 1)</td><td>구분</td><td colspan="2">조치방법</td><td colspan="2">조치기한</td></tr>
<tr><td>방법① (권장)</td><td colspan="2">온라인 변경신고 제출(www.RND.or.kr)</td><td colspan="2">2026. 12. 14 (월)까지</td></tr>
<tr><td>방법②</td><td colspan="2">변경신고 외 별도 소명 필요시 서면 제출 및 청문 참석
* 청문 참석은 하기 청문실시 일정 참고 바랍니다.</td><td colspan="2">2026. 12. 14 (월)까지</td></tr>
<tr><td colspan="5">※ 주의: 제출한 변경신고가 처리완료(승인)되거나 별도 소명 내용이 없는 경우, 청문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기업명</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 호</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d><td>부서명</td><td colspan="2">연구소관리팀</td></tr>
<tr><td>주소</td><td colspan="4">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2층 중회의실</td></tr>
<tr><td>일시</td><td>2026년 12월 15일 화요일 14:00</td><td>장소</td><td colspan="2">산기협회관</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팀장</td></tr>
<tr><td>성 명</td><td colspan="3">윤영근</td></tr>
<tr><td>취소예정일</td><td colspan="5">2026. 12. 31(목)</td></tr>
</table>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2026. 12. 14(월)까지** 변경신고 혹은 사전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6. 12. 31(목)부**로 인정이 취소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청문 참석이나 의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2026. 12. 14(월)까지** 본회에 해당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 결과에 대한 정정 요구 기간: 2026. 12. 16(수) ~ 12. 28(월)

4. 문의처

○ 변경신고 제출 관련: 연구소운영팀 (국번 없이 1379)

○ 청문회 참석 관련: 연구소관리팀 (02-3460-9150, 9144, 9146)

붙임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및 12월 청문참여 안내 1부. 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사원	박선영	팀장	전결 09/16 주범식

협조자

시행 연구소관리팀-729 (2026.09.16.) 접수 ()

우 / http://www.koita.or.kr

전화 02-3460-9150 전송 02-3460-9019 sy1@koita.or.kr / 공개

"Technology Innovation Network Hub"

붙임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및 청문참여 안내(안내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및 12월 청문참여 안내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취소예정일 이전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해소한 경우, 청문참여가 불필요 합니다.

변경신고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진행 바랍니다.

❍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① 벤처기한이 연장된 경우: 기한 연장된 벤처기업확인서 첨부하여 변경신고

② 벤처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기한 내 벤처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하여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신고 및 연구전담요원 충원 (중기업: 5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 2명이상)
- 보완명령 연장신청(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완명령 연장신청])

③ 위와 같이 ①,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자진취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 설립

❍ 창업3년 소기업 '연구소' 유효기간 만료

① 변경신고: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배치(벤처: 2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완명령 연장신청])

③ 자진취소: ①,②의 요건 미충족시 연구소 자진취소 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설립

❍ 창업3년 소기업 '전담부서' 유효기간 만료

① 변경신고: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등록 후 변경신고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완명령 연장신청])

③ 자진취소: ①,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진취소

❍ 현장조사(서면확인) 시 보완명령 결과를 받은 기업

① 수령한 현장조사(서면확인) 보고서 상의 조치사항을 보완하여 변경신고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완명령 연장신청])

❍ 현장조사(서면확인) 시 직권취소/허위취소 결과를 받은 기업

소명할 내용이 있을 시, 청문 참석 (청문 불참 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확정)

❍ 현장조사시 추적불가 결과를 받은 기업

이전한 주소 및 담당자, 인력현황 등을 업데이트하여 변경신고

2. 청문참여 안내

□ 사전의견 제출을 통한 청문참여 안내

- **기한 내 변경신고 처리완료 시, 사전의견 제출 및 청문참여 불필요**
- **사전의견 제출과 청문 참여는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사전의견 제출서류

 가. 공문(자사양식)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의견내용 등을 기재

 나. 위 공문에 기재한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등(자유양식)

 다. 제출기한 : **청문일자 전(12/14(월))까지 제출가능**

 라. 제출방법 : 이메일(sy1@koita.or.kr, kbb@koita.or.kr)

□ 청문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 청문참여 방법

 ① 소명할 사실에 대한 사전의견 제출서류(공문, 증빙자료)를 청문 전 본회에 제출

 ② 직접 참석

 ※ **청문에 직접 참석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에 직접 참석할 경우, 사전의견 제출과 마찬가지로 공문 및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소명할 사실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 청문참여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에 대한 소명 또는 "법적근거"가 변경 되지 않는 경우, 청문 이후 안내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정됩니다. 사전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불참석할 경우의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사전의견서 및 증빙자료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에 대한 소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문시 기업 내부사정 등(예: 단순 실수, 인수인계 부족, 신고하지 않은 대체인력 존재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진술은 고려되지 않습니다.